# 더파크 비스타동원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88-6999

| 주택유형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규제지역여부   |      |  |  |
|-------|----------|-----------|-------------|------|----------|------|--|--|
| 민영    |          | 부산광역시 거주자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 재당첨제한 | <u>.</u>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성 | 상한제 택지유형 |      |  |  |
| 없음    | 6개월      |           | 없음          | 미적   | 용        | 민간택지 |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10.10.(금) | 2025.10.20.(월) | 2025.10.21.(화) | 2025.10.22.(수) | 2025.10.28.(화) | 2025.10.31.(금)~<br>2025.11.09.(일) | 2025.11.10.(월)~<br>2025.11.12.(수) |

# 공통 유의사항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               | 일반공급  |                 |               |              |     |
|------------|------|---------------|-------|-----------------|---------------|--------------|-----|
| 2644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 치금 충족 | 1순위( <b>6개월</b> | 이상, 지역별·면적별 여 | <br>  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 -<br>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파크비스타동원.com)에 공개하며, 공 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0          |             |           |           |            |  |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         | )         | X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1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5.10.20.(월)                                      | 2025.10.21.(화)                         | 2025.10.22.(수) | 2025.10.28.(화) | 2025.10.31.(금)~<br>2025.11.09.(일) | 2025.11.10.(월)~<br>2025.11.12.(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기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 -<br>- 덕천동 350-31)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 - 39300호(2025.10.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산1-9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852세대

[특별공급 467세대(기관추천 85세대, 다자녀가구 85세대, 신혼부부 196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생애최초 7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단위: m², 세대)

|            |    | T (1) +1        | 주택공급면적(m²) |            | 기타 계약 세대별  | * 7 7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 최하층       |          |     |     |             |
|------------|----|-----------------|------------|------------|------------|----------|------------------|----------|-------------|------------|----------|-----------|----------|-----------|----------|-----|-----|-------------|
| 주택<br>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공급<br>세대수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세대수 | 우선배정<br>세대수 |
|            | 01 | 84.9957A        | 84A        | 84.9957    | 26.7123    | 111.7080 | 49.3861          | 161.0941 | 55.3605     | 552        | 55       | 55        | 127      | 17        | 50       | 304 | 248 | 24          |
|            | 02 | 84.9958B        | 84B        | 84.9958    | 28.0396    | 113.0354 | 49.3861          | 162.4215 | 55.3605     | 143        | 14       | 14        | 33       | 4         | 13       | 78  | 65  | 6           |
| 2025000462 | 03 | 84.9914C        | 84C        | 84.9914    | 26.2601    | 111.2515 | 49.3836          | 160.6351 | 55.3577     | 135        | 14       | 14        | 31       | 4         | 12       | 75  | 60  | 6           |
|            | 04 | 84.9852T        | 84T        | 84.9852    | 25.8341    | 110.8193 | 49.3800          | 160.1993 | 55.3536     | 22         | 2        | 2         | 5        | 0         | 1        | 10  | 12  | 8           |
|            | 합계 |                 |            |            |            |          |                  |          | 852         | 85         | 85       | 196       | 25       | 76        | 467      | 385 | 44  |             |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T | 합 계 |
|-----------|---------------|-----|-----|-----|-----|-----|
|           | 국가유공자         | 10  | 2   | 2   | 1   | 15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기복무 제대군인     | 5   | 1   | 1   | 0   | 7   |
| TETE TEGE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5   | 1   | 1   | 0   | 7   |

|       |           | 부산광역시 | 8   | 3  | 3  | n  | 14  |
|-------|-----------|-------|-----|----|----|----|-----|
|       | TI OII OI |       | 0   | 3  | 3  | 0  | 17  |
|       | 장애인       | 울산광역시 | 1   | 0  | 0  | 0  | 1   |
|       |           | 경상남도  | 1   | 0  | 0  | 0  | 1   |
|       | 중소기업      | [ 근로자 | 15  | 5  | 5  | 1  | 26  |
|       | 외항선원      | ! 근로자 | 10  | 2  | 2  | 0  | 14  |
| 다자녀가- | 구 특별공급    |       | 55  | 14 | 14 | 2  | 85  |
| 신혼부부  | 특별공급      |       | 127 | 33 | 31 | 5  | 196 |
| 노부모부영 | 양 특별공급    |       | 17  | 4  | 4  | 0  | 25  |
| 생애최초  | 특별공급      |       | 50  | 13 | 12 | 1  | 76  |
| 합     | 계         |       | 304 | 78 | 75 | 10 | 467 |

<sup>※</sup>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           |          |                                     |       | -11 FL   |            | 공급금액        |             | 계약금(5%)    |            |            | 중도금        | t(60%)     |            |            | TI 7 (250)  |
|-----------|----------|-------------------------------------|-------|----------|------------|-------------|-------------|------------|------------|------------|------------|------------|------------|------------|-------------|
| 주택형       | 약식<br>표기 | 동/호별                                | 층구분   | 해당<br>세대 | Ell Thui   | 71 * 111    | . 74        | 1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잔금(35%)     |
|           |          |                                     |       | 수        | 대지비        | 건축비         | 소계          | 계약시        | 2026-05-10 | 2026-11-10 | 2027-05-10 | 2027-10-10 | 2028-03-10 | 2028-08-10 | 입주지정일       |
|           |          |                                     | 1층    | 6        | 90,846,980 | 454,453,020 | 545,300,000 | 27,265,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190,855,000 |
|           |          | 101, 106동                           | 2층    | 11       | 91,846,580 | 459,453,420 | 551,300,000 | 27,565,000 | 55,130,000 | 55,130,000 | 55,130,000 | 55,130,000 | 55,130,000 | 55,130,000 | 192,955,000 |
|           |          | (1, 2호)<br>104, 107, 110동           | 3층    | 12       | 93,179,380 | 466,120,620 | 559,300,000 | 27,965,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195,755,000 |
|           |          | (2, 3호)<br>105, 108동                | 4층    | 12       | 94,678,780 | 473,621,220 | 568,300,000 | 28,415,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198,905,000 |
|           |          | (1호)                                | 5~10층 | 72       | 96,178,180 | 481,121,820 | 577,300,000 | 28,865,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202,055,000 |
| 84.9957A  | 84A      |                                     | 11층이상 | 167      | 97,677,580 | 488,622,420 | 586,300,000 | 29,315,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205,205,000 |
| 0 1.33377 | 0.51     | 101, 106동<br>(4호)<br>102동<br>(1~4호) | 1층    | 4        | 92,179,780 | 461,120,220 | 553,300,000 | 27,665,000 | 55,330,000 | 55,330,000 | 55,330,000 | 55,330,000 | 55,330,000 | 55,330,000 | 193,655,000 |
|           |          |                                     | 2층    | 12       | 93,179,380 | 466,120,620 | 559,300,000 | 27,965,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55,930,000 | 195,755,000 |
|           |          |                                     | 3층    | 12       | 94,678,780 | 473,621,220 | 568,300,000 | 28,415,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56,830,000 | 198,905,000 |
|           |          | 105, 108동<br>(3,4호)                 | 4층    | 12       | 96,178,180 | 481,121,820 | 577,300,000 | 28,865,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57,730,000 | 202,055,000 |
|           |          | 107, 110동<br>(5호)                   | 5~10층 | 72       | 97,677,580 | 488,622,420 | 586,300,000 | 29,315,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58,630,000 | 205,205,000 |
|           |          |                                     | 11층이상 | 160      | 99,176,980 | 496,123,020 | 595,300,000 | 29,765,000 | 59,530,000 | 59,530,000 | 59,530,000 | 59,530,000 | 59,530,000 | 59,530,000 | 208,355,000 |
|           |          |                                     | 1층    | 1        | 89,419,650 | 450,880,350 | 540,300,000 | 27,015,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189,105,000 |
|           |          |                                     | 2층    | 2        | 90,247,150 | 455,052,850 | 545,300,000 | 27,265,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54,530,000 | 190,855,000 |
|           |          | 105,108동                            | 3층    | 2        | 91,736,650 | 462,563,350 | 554,300,000 | 27,715,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194,005,000 |
|           |          | (2호)                                | 4층    | 2        | 93,226,150 | 470,073,850 | 563,300,000 | 28,165,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197,155,000 |
|           |          |                                     | 5~10층 | 12       | 94,715,650 | 477,584,350 | 572,300,000 | 28,615,000 | 57,230,000 | 57,230,000 | 57,230,000 | 57,230,000 | 57,230,000 | 57,230,000 | 200,305,000 |
| 84.9958B  | 84B      |                                     | 11층이상 | 27       | 96,039,650 | 484,260,350 | 580,300,000 | 29,015,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203,105,000 |
|           |          |                                     | 1층    | 3        | 90,743,650 | 457,556,350 | 548,300,000 | 27,415,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191,905,000 |
|           |          | 101,106동                            | 2층    | 4        | 91,736,650 | 462,563,350 | 554,300,000 | 27,715,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55,430,000 | 194,005,000 |
|           |          | (3호)<br>107,110 <del>동</del>        | 3층    | 4        | 93,226,150 | 470,073,850 | 563,300,000 | 28,165,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56,330,000 | 197,155,000 |
|           |          | (4호)                                | 4층    | 4        | 94,550,150 | 476,749,850 | 571,300,000 | 28,565,000 | 57,130,000 | 57,130,000 | 57,130,000 | 57,130,000 | 57,130,000 | 57,130,000 | 199,955,000 |
|           |          |                                     | 5~10층 | 24       | 96,039,650 | 484,260,350 | 580,300,000 | 29,015,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58,030,000 | 203,105,000 |

|              |   | 11층이상 | 58 | 97,529,150  | 491,770,850 | 589,300,000 | 29,465,000 | 58,930,000 | 58,930,000 | 58,930,000 | 58,930,000 | 58,930,000 | 58,930,000 | 206,255,000 |
|--------------|---|-------|----|-------------|-------------|-------------|------------|------------|------------|------------|------------|------------|------------|-------------|
|              |   | 1층    | 2  | 89,228,100  | 445,071,900 | 534,300,000 | 26,715,000 | 53,430,000 | 53,430,000 | 53,430,000 | 53,430,000 | 53,430,000 | 53,430,000 | 187,005,000 |
|              | _                                       | 2층    | 2  | 90,230,100  | 450,069,900 | 540,300,000 | 27,015,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54,030,000 | 189,105,000 |
|              | 104동<br>(1,4호)                          | 3층    | 4  | 91,733,100  | 457,566,900 | 549,300,000 | 27,465,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192,255,000 |
|              | 107,110동<br>(1호)                        | 4층    | 4  | 93,069,100  | 464,230,900 | 557,300,000 | 27,865,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195,055,000 |
|              | (12)                                    | 5~10층 | 24 | 94,572,100  | 471,727,900 | 566,300,000 | 28,315,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198,205,000 |
| 0400445      |   | 11층이상 | 53 | 96,075,100  | 479,224,900 | 575,300,000 | 28,765,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201,355,000 |
| 84.9914C 84C | 105,108 <del>동</del>                    | 1층    | 1  | 90,564,100  | 451,735,900 | 542,300,000 | 27,115,000 | 54,230,000 | 54,230,000 | 54,230,000 | 54,230,000 | 54,230,000 | 54,230,000 | 189,805,000 |
|              |   | 2층    | 2  | 91,566,100  | 456,733,900 | 548,300,000 | 27,415,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54,830,000 | 191,905,000 |
|              |   | 3층    | 2  | 93,069,100  | 464,230,900 | 557,300,000 | 27,865,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55,730,000 | 195,055,000 |
|              | (5호)                                    | 4층    | 2  | 94,572,100  | 471,727,900 | 566,300,000 | 28,315,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56,630,000 | 198,205,000 |
|              |   | 5~10층 | 12 | 96,075,100  | 479,224,900 | 575,300,000 | 28,765,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57,530,000 | 201,355,000 |
|              |   | 11층이상 | 27 | 97,411,100  | 485,888,900 | 583,300,000 | 29,165,000 | 58,330,000 | 58,330,000 | 58,330,000 | 58,330,000 | 58,330,000 | 58,330,000 | 204,155,000 |
|              | _                                       | 1층    | 6  | 98,314,020  | 488,985,980 | 587,300,000 | 29,365,000 | 58,730,000 | 58,730,000 | 58,730,000 | 58,730,000 | 58,730,000 | 58,730,000 | 205,555,000 |
| 84.9852T 84T | 103,109동<br>(1,2,3,4호)                  | 2층    | 8  | 99,988,020  | 497,311,980 | 597,300,000 | 29,865,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209,055,000 |
|              | ( , , , , , , , , , , , , , , , , , , , | 3층    | 8  | 101,662,020 | 505,637,980 | 607,300,000 | 30,365,000 | 60,730,000 | 60,730,000 | 60,730,000 | 60,730,000 | 60,730,000 | 60,730,000 | 212,555,000 |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 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품목 가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 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4 특별공급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br>혼인 전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b>배우자</b> 가 <b>혼인 전 당첨된 이력</b> 에 따른 <b>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b><br>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이력 배제) 제2항    | 생애최초<br>신혼부부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br>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br>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 - <b>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b> 에 한하여   |
|---------------|--------------------------|---|---|
| (혼인특례)        | 다자녀가구                    | <ul> <li>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li> <li>'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li> <li>→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li> </ul> | 적용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은 배제할 수 없음  |
| 제3항<br>(출산특례) |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공공) |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ul> <li>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li>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구분 처리방법   |                               |  |                                |  |  |  |  |
|------|---|-------------------------------|--|--------------------------------|--|--|--|--|
|      | 당첨자빌  | 표일이 다른 주택                     | <b>당첨자발표일</b>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b> 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b>접수일시</b> 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b> 가 늦은 5<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                                |  |  |  |  |
|      | Sewers EC 14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b>부적</b>   | <b>격</b> 처리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   | 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        | 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   | 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  | 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u>,</u>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를   | 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  |
| 무주택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기  | 대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  | 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틱        | 세대구성원 요건   |                                |  |  |  |  |
| 요건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  | 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  |                                |  |  |  |  |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  |
| おいき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                               |  |                                |  |  |  |  |
| 청약통장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  |
| 자격요건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                    | <b>부시</b>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전용면적 85m² 이혀  |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전용면적 102m² 이  | ·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전용면적 135m² 이 이 디디디  | ,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어          |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  |  |  |
|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                                |  |  |  |  |

4-1

| 구분          | 내용   |  |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br>■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  |  |
| 추천기관        |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br>■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5세대

| 구분     |                        |                |                       |               | 내용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일 현재 <b>부신</b> |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신        | !광역시 <b>및</b> | 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          | 원이면 신청가능함      |                       |               |   |
| 대상자    | ■ 만19세 미만의 자녀          | 2명 이상(태여       | 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 분             |   |
|        |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          | 전 말하며          |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        | 민등록표등         |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          | 개월 경과(지        | 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s)한 분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        | ①지역 → ②        | 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 ④청익         | F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        | ■ ① <b>지역</b> : 해당지역 거 | 주자 <b>(부산광</b> | <b>역시 거주자)</b> → 기타지역 | 거주자(울         | <b>앞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b> )                     |
|        | ■ ②배점                  |                |                       |               |   |
|        |                        |                | 배점기준                  |               |   |
| E1+1+1 | 배점항목                   | 총배점            | 기준                    | 점수            | 비고  |
| 당첨자    |                        | 100            |                       |               |   |
| 선정방법   |                        |                | 4명 이상                 | 명 이상 4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3명                    | 3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2명                    | 25            |   |
|        |                        |                | 3명 이상                 | 15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2명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1명                    | 5             |   |

| ### 10년 이상 20  |
|--|
| ### 전체 ### ### ### ### ### ### ### ### #   |
|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6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15 10년 이상 ~ 5년 미만 17 18 기주기간(5) 20 10년 이상 ~ 10년 미만 18 기관 이상 ~ 10년 미만 19 기관 이상 ~ 10년 미만 10 기관 이상 ~ 10년 미만 10 기관 이상 지금 기관 이상 지금 이 무주택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기관 이상 ~ 10년 미만 16 기관 이상 지금 기관 이 기관 |
| # 15   |
| 10   기원 이상 ~ 3년 미원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5   15   15   15   15   15   15   1  |
| # 10년 이상 15 하당 시·도 기주기간(5) 15 15 1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0 16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
| 거주기간(5) 15 <u>5년 이상 ~ 10년 미만 10</u>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
| 1년 이상 ~ 5년 비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 (3) . 인구보 기록의 경구 인구보기록등경시도 확인 (3), (4) . 구력보유여구 한편시 구력등급에 한한 유역을 제3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4-3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96세대

| 구분          |  |                   | 내용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                   |  |  |  |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br>(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br>(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3단계  |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
|--|-------|---|--|
| 3단계  | (25%)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 |       |   |  |
| 4단계  | (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ㄷㄷㄴ게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
| 5단계  | (3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10.10.(금)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ше      | 소득금액        |             |             |             |              |              |
|------------------|------------------------|---------|-------------|-------------|-------------|-------------|--------------|--------------|
|                  | 소득구분 비율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          | 부부 중 한 명만          | 100% 초과                | 7,205,313원~  | 8,578,089원~  | 9,031,049원~  | 9,733,087원~  | 10,435,125원~ | 11,137,163원~ |
| 신생아일반공급, |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10,087,437원  | 12,009,323원  | 12,643,467원  | 13,626,320원  | 14,609,174원  | 15,592,027원  |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646,375원~  | 10,293,707원~ | 10,837,259원~ | 11,679,704원~ | 12,522,150원~ | 13,364,595원~ |
|          |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 14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          | 소득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가<br>시가표준 |                    |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  | 정한 |  |  |  |  |  |  |      |                 |      |                                  |  |
|         |                    | -1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u>난</u> 3억3,100만원 |    | <br>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부동산     |                    |    |                |                    |   |    |  |  |  |  |  |  |      | 十刊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건물+토지) |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토지 | 단, 아래          | 경우는 제외             |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힌<br>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    |  |  |  |  |  |  |      |                 |      |                                  |  |

| I 제안을 받은 경우도자 입우(메장)자가 구세적인 자식판계를 입을야는 경우 |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br>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br>제하을 받는 경우로서 인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식과계를 인주하는 경우 |
|---|---|
|   |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5세대

| 구분   |  |                                      | 내용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  |                   |                                |    |  |  |  |  |
| 대상자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                   |                                |    |  |  |  |  |
|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년                 | 대별 주민등록표등         |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b>한 분</b>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되 <sub>고</sub> 에 따른 <b>'부양'</b> 의 의대 | 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b>            | <b>!는 것</b> 을 의미함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지 제28조제1항의 <b>1순</b>                 | 위에 해당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                   |                   |                                |    |  |  |  |  |
|      | ■ ① <b>지역</b> : 해당지역 거=  | 수자 <b>(부산광역시 거주지</b>                 | <b>ŀ)</b> → 기타지역 거주자 <b>(울산광역시 및 경</b> 성 | 상남도 거주자)          |                                |    |  |  |  |  |
|      | ■ ② <b>가점</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                                      |  |                   |                                |    |  |  |  |  |
|      |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당첨자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선정방법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PJ                           |    |  |  |  |  |
|      |  |                                      | 0명                                       | 5                 | 4명                             | 25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3명                                       | 20                |                                |    |  |  |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③입주자저축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가입기간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                            |        |                 |    |  |  |  |  |
|    | ■ ③ <b>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전, 영국시국에서 중1  | 합시국으로 전환인 경국 | 구 선원개발한 말을 기군으로 함          |        |                 |    |  |  |  |  |
|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 비고 |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 의 배우자가 주택을 걸 | -<br>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 간에서 제외 |                 |    |  |  |  |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 속(피부양자의 배우자  |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 해당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4-5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6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 내용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 <b>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 으로서,                              |  |  |  |
|       |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 <sup>년도</sup>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  |
| 2단계   | (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3단계   |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JE711 | (35%)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 <br>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15%)       |  |   |  |  |  |
|       |             | 혼인 중이거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  |  |  |
| 5단계   | 추첨공급        |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5런게   | (30%) 1인 가구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10.10.(금)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4 E 7 H                 | шо                     |                            |                             | 소득금액                        |                             |                             |                             |  |
|------------------|-------------------------|------------------------|----------------------------|-----------------------------|-----------------------------|-----------------------------|-----------------------------|-----------------------------|--|
|                  | 소득구분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 신생아일반공급,<br>일반공급 |                         | 130% 초과<br>160% 이하     | 9,366,907원~<br>11,528,499원 | 11,151,515원~<br>13,724,941원 | 11,740,363원~<br>14,449,677원 | 12,653,013원~<br>15,572,938원 | 13,565,662원~<br>16,696,198원 | 14,478,312원~<br>17,819,459원 |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당첨자 선정방법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  |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부동산     | 금액<br>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시가표준<br>주택<br>- 토지가액<br>단, 아래                    | 액 적용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경우는 제외  |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건물+토지) | 이하                    | 토지  | 농업인:<br>* 「초지법<br>허가증!<br>* 공부상<br>* 종중소!<br>제한을 | 마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기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br>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br>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br>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br>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 용되고 있는 경우<br>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  |  |

5

| 구분   |  |   | 내용  | ;           |                                   |        |  |  |  |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이<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4  | 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br>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고<br> 탁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ul> <li>★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 | 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형에 한함) |  |  |  |  |
| 청약통장 |  |   | [ 청약예금의 예   | 치금액 ]       |                                   |        |  |  |  |  |
| 자격요건 | 구 분  | E .   | 투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                     | 한 지역   |  |  |  |  |
|      | 전용면적 85m² (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전용면적 102m²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             |                                   |        |  |  |  |  |
|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기<br>■ 당첨자 선정 순서<br>- 1순위 가점제 : ①지역<br>- 1순위 추첨제 : ①지역<br>- 2순위 : ①지역 → ②추                        | 나능한 전용면적 이하에<br>→ ②가점 → <b>③청약통장</b><br>→ ②무주택자 우선공급<br>첨<br>자 <b>(부산광역시 거주자)</b> - | _   |             |                                   |        |  |  |  |  |
| 당첨자  | 5  | <br>¹분  | 가점저   | <u> </u>    | 추첨제                               |        |  |  |  |  |
| 선정방법 |  | <u>-</u><br>초과 85㎡ 이하   | 40%   |             | 60%                               |        |  |  |  |  |
|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  |   | : 나목)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br>1년 이상 ~ 2년 미만  | 2 4         | 9년 이상 ~ 10년 미만<br>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     |  |  |  |  |
|      | <b>少</b> 구구적기간   | 52  | 2년 이상 ~ 2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족수        | 35 |          | 1명                        | 10    | 5명              | 30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          | 2명                        |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본인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③입주자저축        | 17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가입기간          | 17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HII O TL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배우자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          | <b>※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b> | 2 + 3 |                 | •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br>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br>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
| ②부양가족의<br>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기존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소유여부 및<br>무주택기간<br>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 ■ ② <b>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  |  |  |  |
|----|--|-------------|-----------------------------|--|--|--|--|
|    | 단계   | 단계 비율 내용    |                             |  |  |  |  |
|    | <br>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비고 | <ul> <li>□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  |  |  |  |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신청일정

6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장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br>다자녀가구,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5.10.20.(월)<br>(청약Home 인터넷: 09: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ul>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PC: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li>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31)</li> <li>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2025.10.21.(화) 09:00~17:30  | (FC <u>TE </u> <u> </u>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2순위                                  | 2025.10.22.(수) 09:00~17:30  |                         | - 스마트폰앱 ***<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  |  |  |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
| ┃<br>┃ 제3자 대리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시3시 네니션 8 시<br>추가서류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  |  |  |  |
|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  |  |
|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  |  |  |
|                     |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  |  |  |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사기 제주면 나르는 치ᄎ 이즈지디지고그이 이중 바해보에 하치면 사기 그비나하이 인비디어의 견으에 하치면 저스하/다 변경이 이의 경으 변경되고 펜츠\   |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br>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  |  |
|--|--|--|--|--|--|--|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br>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  |  |
| 청약홈  | - 조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2025.10.28.(화) ~ 2025.11.0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5.10.2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확인하여 드리뷰<br>- 서비스 이용은<br>- 이용방법 : 청억<br>- 공고일 다음날부<br>모집공고에 대한<br>- 세대원 등록방<br>- 이용방법 : 공고<br>청약홈  |  |  |  |  |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일정

|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 2025.10.31.(금) ~ 2025.11.09.(일) 10:00~17:00까지  |
|-------------|--|
|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 제출장소        |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31)  |
| 유의사항        | <ul> <li>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0.(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0.(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 나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 <표1>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 서류 | 루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0  |             | 특별공급신청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공통서류<br>- | 0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서류 | 루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위임 불가)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br>포함하여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br>하여 발급요망  |
|                   |    | 0           | 구인승국표승근(승세 <i>)</i>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br>"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br>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br>(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br>※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br>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0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0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br>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br>・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 0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br>인증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br>가구<br>특별공급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br>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성명, 관<br>계 "상세"로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               | 서루 | 루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또는<br>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br>・만 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br>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전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br>(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br>[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포함하 여<br>"상세"로 발급  |
|               | 0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br>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   |
|               |    | 0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신혼부부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특별공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또는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br>(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br>・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부동산 소유현황<br>(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괴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br>(소유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               |    | 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 전체 포함하여 발급<br>(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br>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br>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세대주의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br>"전체포함"하여 발급   |

|              | 서류 | 루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br>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0           | 직계존속의 배우자<br>주민등록표 등본      | 피부양<br>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또는<br>자녀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br>・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br>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br>이상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br>(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br>가능]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              | 0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br>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br>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br>- 견본주택 비치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br>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br>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br>"전체포함"하여 발급)                                       |
| W OU +1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0           | 임신진단서류 또는<br>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br>-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경우<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는 근단계 ㅎ 증시(중세)             | 직계비속                | ·공고일 이후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br>할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전원의 서류를<br>모두 제출<br>-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 현황"<br>(소유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              |    | 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br>・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서류 | 루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부적격<br>당첨<br>통보를 |    | 0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b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br>(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받은자              |    | 0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br>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br>대리인       |    | 0           | 위임장                   | 청약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청시              |    | 0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표2>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br>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세무서<br>(또는 국세청 홈택스) |
| 근<br>로<br>자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br>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br>발급되지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br>※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br>② 세무서                       |
| 71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br>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 ①, ② 세무서                              |
| 자<br>영<br>업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br>② 세무서                   |
| 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 해당직장<br>※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br>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br>: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견본주택 비치<br>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 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제출서류   | 발급처             |  |  |
|--------------------------|---------------|--|--|-----------------|--|--|
| <i>;</i><br>생애최초<br>특별공급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자격입증<br>서류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
|                          | Лπ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br>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br>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여부     |             | 증빙제출서류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br>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있는 경우    | 추가<br>(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br>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br>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

|                   |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 부동산소유현황이<br>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br>※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br>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7.4        | 서류 | 류유형         | #5.4.7       | W 7 - 1 F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0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및 일자, 세대주 및<br>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br>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0  |             | 인감증명서        | 본인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br>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br>-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일반공급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2006       |    | 0           | 단신부임 입증서류    | 본인             |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br>경우 ※ 군 복무 기간 (10년 이상) 명시   |
|            |    | 0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r>되어 있을 경우<br>•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br>본에 등재시만 인정)                             |
|            |    | Ο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br>직계존비속 |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br>※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br>※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br>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br>•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점제<br>당첨자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br>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br>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7                              | 서류 | 류유형         | #IEI : 1 =            |             |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 0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br>순위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br>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0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 이상 부양)<br>•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0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0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 상기                    | 구비서류 외 축    | 수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                                | 0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br>단, 외국인의 경우 국적지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본인발급용)  |  |
| 제3자<br>대리인<br>접수시              | 0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br>•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
| 접구시<br>추가사항                    | 0  |             | 위임장                   |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br>(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부적격 통보를<br>받은자<br>(해당주택에<br>대한 |    | 0           | 해당 주택에 대한<br>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발급)                             |  |
| 소명자료)<br>                      | 0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br>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sup>※</sup>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sup>※</su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8

| 구분                                   | 계약장소                                    | 계약기간                      | 문의 전화     |
|--------------------------------------|---|---------------------------|-----------|
| 당첨자 계약 체결<br>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31) | 25.11.10.(월)~25.11.12.(수) | 1588-6999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 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시 구비사항

|            | 서류유형                                   |  |                        | 발급  |  |
|------------|--|--|------------------------|-----|--|
| 구분         | 필수                                     | 추가<br>(해당자)  | 구비서류                   | 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0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본인<br>계약 시 | 본인<br>약 시 C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br>-<br>- |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구매 및 출력 |                        |     |  |
|            |  | 0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0  | 적격여부 확인 추가 서류          |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인        | 0                                      |  | 상기 본인서류                | 계약자 |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항목 전체   |

|      | 0 | 위임장          | 계약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견본주택 비치             |
|------|---|--------------|-----|--|
| 계약 시 | 0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본인의 인감도장 |
|      | 0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대리인 인감도장          |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양수후 청약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건축허가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선택품목이 있을 경우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발코니 확장 등)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때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계약자와 매수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청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추효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393301-04-110194 | 대한토지신탁(주) |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 101동 1403호' → 홍길동1011403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계좌는 신탁계좌(관리자금 계좌)로 입금 되어야 보증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으로 납부시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청약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해약절차 진행 후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답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계약자 개인의 신용등급, 대출한도 여부에 따라 총분양대금의 60%범위 이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 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의 변경 등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아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으로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 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 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 부대복리시설

9

#### 부대 ·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조경시설, 비상급수시설,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주민카페 등),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게야그/100/\ **本にユ/200/**) **本にユ/200/**) 자그/500/\

| 주택형(약식표기) | 고그그애              | 게 듹 ㅁ(10%)   | 중도급(20%)   | 궁도급(20%)  | 선 🗕 (30%)   |
|-----------|-------------------|--|--|---|---|
|           | ㅇㅂㅁㅋ              | 계약시  | (26.05.10.)  | (27.05.10.)   | 입주지정일   |
| 84A       | 29,550,000        | 2,960,000  | 5,920,000  | 5,920,000   | 14,750,000  |
| 84B       | 27,160,000        | 2,720,000  | 5,440,000  | 5,440,000   | 13,560,000  |
| 84C       | 31,680,000        | 3,170,000  | 6,340,000  | 6,340,000   | 15,830,000  |
| 84T       | 16,650,000        | 1,670,000  | 3,340,000  | 3,340,000   | 8,300,000   |
|           | 84A<br>84B<br>84C | 84A 29,550,000<br>84B 27,160,000<br>84C 31,680,000 | 수택형(약식표기)공급금액계약시84A29,550,0002,960,00084B27,160,0002,720,00084C31,680,0003,170,000 | 수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시     (26.05.10.)       84A     29,550,000     2,960,000     5,920,000       84B     27,160,000     2,720,000     5,440,000       84C     31,680,000     3,170,000     6,340,000 | 수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시     (26.05.10.)     (27.05.10.)       84A     29,550,000     2,960,000     5,920,000     5,920,000       84B     27,160,000     2,720,000     5,440,000     5,440,000       84C     31,680,000     3,170,000     6,340,000     6,340,000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국민은행 | 393301-04-110219 | 대한토지신탁(주)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1동 701호 홍길동 → 10107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입금자명이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위치, 확장면적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 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해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

###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 3<br>급(20%) 전금(50%)<br>(5.10.) (입주지정일)<br>0,000 3,450,000<br>2,3 : 5평 x 2  |  |  |  |  |  |
|--|--|--|--|--|--|
| 전금(50%)<br>(15.10.) 전금(50%)<br>(10주지정일)<br>0,000 3,450,000<br>2,3 : 5평 x 2 |  |  |  |  |  |
| 05.10.) (입주지정일)<br>0,000 3,450,000<br>2,3 : 5평 x 2                         |  |  |  |  |  |
| 05.10.) (입주지정일)<br>0,000 3,450,000<br>2,3 : 5평 x 2                         |  |  |  |  |  |
| 2,3 : 5평 x 2   |  |  |  |  |  |
|  |  |  |  |  |  |
| 5평   |  |  |  |  |  |
|  |  |  |  |  |  |
| AJ020BN1PBC1 + PC1NWSK3NW  |  |  |  |  |  |
|  |  |  |  |  |  |
| 2안<br>전평형  |  |  |  |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3   |  |  |  |  |  |
| 7,900,000  |  |  |  |  |  |
| 급(20%) 잔금(50%)<br>95.10.) (입주지정일)  |  |  |  |  |  |
| 0,000 3,950,000  |  |  |  |  |  |
| 2,3 : 5평 x 2   |  |  |  |  |  |
| 5평   |  |  |  |  |  |
| BN1PBC1 + PC1NWCK3NW   |  |  |  |  |  |
| .0<br>i8(  |  |  |  |  |  |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 예정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안방(침실1), 거실1되며, 옵션 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상기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은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2) 현관중문

단위: 원, VAT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 1,610,000 | 170,000           | 340,000                 | 340,000                 | 760,000            |          |
| 84B     | 현관 중문, 벽체 시트판넬 | 1,600,000 | 160,000           | 320,000                 | 320,000                 | 800,000            | 미선택시 미설치 |
| 84C     | (3연동 슬라이딩 중문)  | 1,630,000 | 170,000           | 340,000                 | 340,000                 | 780,000            | 미선택시 미글시 |
| 84T     |                | 1,830,000 | 190,000           | 380,000                 | 380,000                 | 880,000            |          |

### (3) 침실2 붙박이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전평형     | 침실2 붙박이장 | 1,060,000 | 110,000           | 220,000                 | 220,000                 | 510,000            | 미선택시 미설치 |

## (4) 통합 침실 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침실2&침실3 대형 붙박이장<br>침실2&침실3 슬라이딩도어(4연동) | 2,090,000 | 210,000           | 420,000                 | 420,000                 | 1,040,000          |           |
| 84B     |  | 2,090,000 | 210,000           | 420,000                 | 420,000                 | 1,040,000          | 미선택시 벽체시공 |
| 84C     |  | 1,770,000 | 180,000           | 360,000                 | 360,000                 | 870,000            | 미산택시 탁세시승 |
| 84T     |  | 1,970,000 | 200,000           | 400,000                 | 400,000                 | 970,000            |           |

※ 침실2 붙박이장과 통합 침실 특화 동시 선택은 불가능하며,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5) 세라믹 타일 아트월, 벽 시트판넬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거실 세라믹 타일 아트월, 복도+거실벽 시트판넬<br>- | 3,250,000 | 330,000           | 660,000                 | 660,000                 | 1600,000           |           |
| 84B     |                                 | 2,920,000 | 300,000           | 600,000                 | 600,000                 | 1,420,000          | 미선택시 기본벽지 |
| 84C     |                                 | 2,910,000 | 300,000           | 600,000                 | 600,000                 | 1,410,000          | 미선택시 기본력시 |
| 84T     |                                 | 2,910,000 | 300,000           | 600,000                 | 600,000                 | 1,410,000          |           |

# (6) 에디톤 바닥마감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br>(거실+주방)에디톤 고밀도복합바닥재<br>- | 1,330,000 | 140,000           | 280,000                 | 280,000                 | 630,000            |          |
| 84B     |                               | 1,230,000 | 130,000           | 260,000                 | 260,000                 | 580,000            | 미선택시 강마루 |
| 84C     |                               | 1,240,000 | 130,000           | 260,000                 | 260,000                 | 590,000            | 미선택시 성미구 |
| 84T     |                               | 1,170,000 | 120,000           | 240,000                 | 240,000                 | 570,000            |          |

## (7) 거실 조명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천정 간접조명+디자인조명+벽체간접조명<br>+거실 벽체간접조명 BOX | 2,570,000 | 260,000           | 520,000                 | 520,000                 | 1,270,000          |           |
| 84B     |  | 2,570,000 | 260,000           | 520,000                 | 520,000                 | 1,270,000          | 미선택시 기본조명 |
| 84C     |  | 2,540,000 | 260,000           | 520,000                 | 520,000                 | 1,240,000          | 미인력시 기근보증 |
| 84T     |  | 2,450,000 | 250,000           | 500,000                 | 500,000                 | 1,200,000          |           |

## (8) 주방 가구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 4,590,000 | 460,000           | 920,000                 | 920,000                 | 2,290,000          |                 |
| 84B     | 유리상부장(유리프랩+조명)+독립후드+고급하부장 +아일랜드장(시트지 변경) + 인덕션 1구(84T타입은 제외)+주방벽 세라믹 타일 | 3,770,000 | 380,000           | 760,000                 | 760,000                 | 1,870,000          | 미선택시 일반가구       |
| 84C     |   | 3,220,000 | 330,000           | 660,000                 | 660,000                 | 1,570,000          | - 미선택시 글린기구<br> |
| 84T     | 제품/기 8 기 제의 기 기본  | 3,400,000 | 340,000           | 680,000                 | 680,000                 | 1,700,000          |                 |

## (9) 주방 조명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주방 우물천장+천장 라인등+간접조명+식탁등<br>[84C타입은 간접조명 제외, 루버천정(우물천정 확장) 포함] | 960,000   | 100,000           | 200,000                 | 200,000                 | 460,000            |           |
| 84B     |   | 1,010,000 | 110,000           | 220,000                 | 220,000                 | 460,000            | 미선택시 기본조명 |
| 84C     |   | 710,000   | 80,000            | 160,000                 | 160,000                 | 310,000            | 미선택시 기근요당 |
| 84T     |   | 800,000   | 80,000            | 160,000                 | 160,000                 | 400,000            |           |

## (10) 주방 장식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주방장식장 상부유리장+홈바 | 2,240,000 | 230,000           | 460,000                 | 460,000                 | 1,090,000          |          |
| 84B     | 유리장식장          | 1,210,000 | 130,000           | 260,000                 | 260,000                 | 560,000            | 미선택시 미설치 |
| 84C     | 아일랜드 코너 장식장    | 840,000   | 90,000            | 180,000                 | 180,000                 | 390,000            |          |

## (11) 빌트인 가전

(단위: 원, 부가세포함)

| 품목        | 선택형(유상)   | 모델명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 삼성전자 -<br>빌트인 냉장고 비스포크3+키큰장1 RR40C79(8)95AP(냉장)<br>RZ34C79(8)65AP(냉동) | RR40C79(8)954P(낸잔) | 84A | 5,030,000 | 510,000           | 1,020,000               | 1,020,000               | 2,480,000          |           |
| 비 비트이 내자그 |   |                    | 84B | 5,150,000 | 520,000           | 1,040,000               | 1,040,000               | 2,550,000          | 미선택시 냉장고장 |
|           |   |                    | 84C | 4,990,000 | 500,000           | 1,000,000               | 1,000,000               | 2,490,000          | 미선택시 중앙고양 |
|           |   | RQ34C79(8)45AP(김치) | 84T | 4,910,000 | 500,000           | 1,000,000               | 1,000,000               | 2,410,000          |           |
| 식기 세척기    |   | 삼성전자-DW80F71Y1SEW  | 전타입 | 1,140,000 | 120,000           | 240,000                 | 240,000                 | 540,000            | 미선택시 주방장  |

# (12) 안방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 3,400,000 | 340,000           | 680,000                 | 680,000                 | 1,700,000          |              |
| 84B     | _<br>-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조명+제습기(천장형) | 3,640,000 | 370,000           | 740,000                 | 740,000                 | 1,790,000          | 미선택시 포스트형 선반 |
| 84C     | - 학원필양 시끄럼 전원+조성+세급기(전성영)      | 3,160,000 | 320,000           | 640,000                 | 640,000                 | 1,560,000          | 설치           |
| 84T     |                                | 2,720,000 | 280,000           | 560,000                 | 560,000                 | 1,320,000          |              |

#### (13) 복도 유리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C     | 복도 조명 유리장 + 붙박이장 | 2,890,000 | 290,000           | 580,000                 | 580,000                 | 1,440,000          | 미선택시 선반장(문없음) |

### (14) 공용욕실 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전평형     | 수납일체 세면기+복합 환풍기+비데일체형 양변기 | 1,870,000 | 190,000           | 380,000                 | 380,000                 | 920,000            | 미선택시 일반세면기, 양변기<br>복합환풍기 미설치 |

### (15) 부부 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         |                           |           |                   |                         |                         |                    | ( - 11: / 1 1 1 / 1         |
|---------|---------------------------|-----------|-------------------|-------------------------|-------------------------|--------------------|-----------------------------|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전평형     | 수납일체 세면기+복합 환풍기+비데일체형 양변기 | 1,670,000 | 170,000           | 340,000                 | 340,000                 | 820,000            | 미선택시 일반세면기,양변기<br>복합환풍기 미설치 |

### (16) 미세방범방충망

(단위: 원, 부가세포함)

| 구분(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시) | 중도금(20%)<br>(26.05.10.) | 중도금(20%)<br>(27.05.10.) | 잔금(50%)<br>(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미세방범 방충망 | 1,330,000 | 140,000           | 280,000                 | 280,000                 | 630,000            |        |
| 84B     |          | 1,480,000 | 150,000           | 300,000                 | 300,000                 | 730,000            | 일반 방충망 |
| 84C     |          | 1,300,000 | 130,000           | 260,000                 | 260,000                 | 650,000            | 르틴 이징이 |
| 84T     |          | 1,700,000 | 170,000           | 340,000                 | 340,000                 | 850,000            |        |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국민은행  | 393301-04-110264 | 대한토지신탁(주) |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 추가 선택품목을 시공함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 ┃• 상기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함.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예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11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                       | 부 <b>확인방법 및 판정기준</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br>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br>소유하지<br>않은 것으로<br>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리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하 오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m²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 단독주택             |         |         |      |  |
| 제53조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85m² 이하 | 5억원     | 3억원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단지여건 및 설계등의 유의사항 등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통사항

12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을 득한 사업으로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 및 검침업무를 위하여 주·부출입구 부근에 계량기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www.더파크비스타동원.com)를 참고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사이버 포함)의 게 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기간 동안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가 될 수 있음.
- ┃■ 보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타 관련법률 및 규정,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진출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용 및 완화차로 확보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와 연계된 도로 구배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되는 도로 및 보도,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보도 포장 재질 및 패턴, 기타 도로시설물 등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는 해당 지방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 의 없이 동의함.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mº)]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등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 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로비 등)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은 해당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같은 주택형일지라도 세대별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면적은 지구단위 및 사업시행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에 의한 지적분할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 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 정산은 없 음.
- 배분된 대지지분과 별도로 단지 내 일부 토지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심의사항 이행 또는 사업시행인가(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이 관련 법령에 의거 경미한 변 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될 수 있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형태 및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공원부지 준공결과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 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 당첨자의 경우 선의에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을 확인하여야 함. (계약체결 불가)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 공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준공 입주 후 기타전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불법 확장 등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단위세대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및 해당 세대 공용부의 불법 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겨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겨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마트스위치 등의 제품사양 및 디자인,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스위치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겨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 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 및 단위세대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겨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 부하여야 하기로 함.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음.
- 단지 내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은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민 공동 부담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 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는 전망을 일부 가릴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경우, 본 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공용부 전기/통신시설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 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부산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 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침실 선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변 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청소차량 진입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 용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시 분리 수거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외부로 노출되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 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음으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 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택배 및 통학차량의 출입 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내 차량통행로 및 차단기 계획은 이용 상의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선형 및 설치위치, 개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동에 대한 주거환경간섭의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주민들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단지 출입구의 문주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코어별 계단실의 창호는 해당 층의 세대와 인접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저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일부 세대 침실 등의 공간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하여 운행진동/소음이 세대 내부로 전해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본 단지 지상과 지하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될 예정이나, 아파트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 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까지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주(계약)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별로 지분 및 소유를 주장하거나 출입구를 통제 및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향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대지지분, 계약면적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근린생활시설 합산)의 합산 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택배차량(높이 2.7m 미만)은 지하주차장 2층, 4층과 지상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지하주차장 층에는 진입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각 충별로 주거동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각 코어별 배치 대수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향후 지하층 배수기능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추가가 될 경우, 이에 따른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공용 전기료로 부과됨.
-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동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설치위치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 레벨에 따라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및 차량 빛 공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 및 가스공급을 위한 한전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 가스시설물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 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였음. 단지 내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 중계장치, 접지단자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 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2동, 105동, 108동 옥 상층, 지하4층 휀룸, 지하2층 휀룸.
-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 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되어 설치되며(근생 주차 13대 설치)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주거여건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 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 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 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 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 되지 않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단지별 선별 적용되는 시스템들(예: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함. 해당 비용 은 입주자 부담임.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보일러 연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지하암반 출현,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 분양권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 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세대/디자인

-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몰딩,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환기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대피를 위한 피난사다리가 설치되고 측세대. 중간세대. 해당 층. 위치별로 내부 치수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외부 창호 및 출입문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며, 시공 시 그릴창 또는 난간대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고 실외기실 그릴은 수동형 제품임.
-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겨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타입별 주방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관 바닥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겨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있으며 슬리퍼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예정임.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 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 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충·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D는 옥상 배수 등 공용 기능을 위한 설비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내부로 전달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변경)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방수 및 재료분리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슬리퍼 등을 사용할 경우 발이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로 인하여 미관이(방충망 색상, 돌출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방충망 돌출로 인해 공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타입 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겨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조변경에 따른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 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배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외부로 노출되어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으며, 배수 기능으로 인한 소음 등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 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 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 당 현장은 주방 벽 및 욕실 벽에 타일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 세대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안방(침실1)내부 벽 또는 침실내부 벽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 수도, 가스,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제공/전시품목

-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 및 각종 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벽체장식판넬 등), 전시조명등은 견 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추후 본공사 시 설치 예정 모델과 상이할 수 있음.

#### ■ 환경권 및 외부환경 디자인

-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 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 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어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소음이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혀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각동의 지하층에는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등의 환기구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그늘, 빛의 산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 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에 근접한 동은 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창호에서 문주로 인한 조망, 채광, 소음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은 그 디자 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 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시공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등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동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부산광역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건축, 교통, 경관) 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향후 필요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변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 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 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본 단지의 체육시설은 실외 주민운동시설과 실내 운동시설(휘트니스, G.X 등)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설치 시설물의 수량과 형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 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 홍보물

- 당 사업지와 관련하여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 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아파트 브랜드 및 네이밍(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지역 공사 완료 및 공원시설의 기부채납 후 비공원시설(아파트 포함)이 사용승인되며, 비공원시설(아파트 포함)의 토지는 사용승인 후 도시공원에서 제 척 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남서측으로『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구역(면적: 3,021,000㎡)이 위치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어 해당 산업시설에 의한 환경관련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구역 에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특정 대기 유해 물질 포함) 및 악취 배출 정보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사상 구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대기질 및 악취 등) 민원발생시 사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내용 민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중에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레벨차이 및 동간 거리로 인해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준공(사용검사) 이후 기반시설도로(중로2-101호선) 종점부의 회차시설 진입차단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회차시설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사상구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 ┃■ 아파트의 부지 경계를 넘어서는 영구 앙카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에 공원점용료가 부과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계좌번호 : 393301-04-110194 은행명 : 국민은행] 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대한토지신탁(주)는 본 아파트 "더파크비스타동원"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 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대한토지신탁(주)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본 아파트는 사상근린공원의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어 공원 방문객들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월 3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연기를 사전에 안내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거나 입주시기 연기(지연)에 따른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예비입주자 모임(카페, 동호회 등)을 결성하여 분양계약서 및 견본주택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 공사,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요구, 하도급 업체 선정요구(이권개입 등), 입주지정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예정일 : 2029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란, 외환, 계엄,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 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총 1,051대 (공동주택 1,038대, 근린생활시설 13대)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                          | 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1호) | 바닥난방의 단열재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br>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 에너지기자재<br>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br>소비 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8.3 level | 2.7m       | 2.7m 이상     |
| +77.3 level | 2.7m       | 2.7m 이상     |

### ■ 내진 성능 및 능력

| 최대지반가속도 | 내진능력(MINI등급) |  |  |
|---------|--------------|--|--|
| 0.242g  | VII          |  |  |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급자/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2만원 |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q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 1. 「본 사업은 위탁자 ㈜사상파크홀딩스, 시공사 ㈜동원개발,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 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입니다.」
- 2. 「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입금을 위하여 개설된 신탁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3. 「본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 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 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4. 「본건 공급계약상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됩니다.」
- 6.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본건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매수인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  | 보증기간  |  |  |
|-------------------------|--|---|--|--|
| 제 01282025-101-0005300호 | 삼천이백이십이억삼천삼백구십구만원정<br>(₩ 322,233,99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 포함)까지 |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 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 VAT 포함)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및 정보통신   |  |
|-------------------|---------------|-------------|-------------|--|
| 상 호               |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 (유)광진이엔지    | ㈜건일씨엠       |  |
| 금 액 3,729,880,000 |               | 736,126,999 | 583,000,000 |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사                    | 시공사   |
|---------|------------------------------|--------------------------|---|
| 상 호     | 대한토지신탁(주)                    | ㈜사상파크홀딩스                 | ㈜동원개발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0, 7층 720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br>상가동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
| 사업자등록번호 | 116-81-65952                 | 738-88-01548             | 604-81-19275                                |

-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 견본주택 주소 |                       |              | 부산광역시 북구 덕친  | 년동 350-31번지  |                               |
|---------------------|---------|-----------------------|--------------|--------------|--------------|-------------------------------|
| # / HAINT           | 현장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산1-9 일원 |              |              |              |                               |
| 교호의 부산북구<br>문화예술회관  | 운영 시간   | 10:00 ~ 18:00         |              |              |              |                               |
| 신협                  | 분양 문의   | 1588 - 6999           |              |              |              |                               |
|                     |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기간                        |
| 건본주택<br>대천역 뉴코아아용렛  | 주요 일정   | 25.10.20.(월)          | 25.10.21.(화) | 25.10.22.(수) | 25.10.28.(화) | 25.10.31.(금)~<br>25.11.09.(일) |
| 구포성성병원<br>구포시장 부산은행 | 홈페이지    |                       |              | (www.더파크비스   | 타동원.com)     |                               |

<sup>※</sup>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25.11.10.(월)~ 25.11.12.(수)

<sup>※</sup>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sup>│※</sup>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sup>※</sup>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만차 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